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3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노종면・이정헌・황정아

정동영 · 조인철 · 박민규

이훈기 · 김우영 · 최민희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함)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또한,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 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,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또한,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,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6조, 제9 조, 제10조의3·제10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전문성"을 "전문성, 지역"으로,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15명이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. 이 때, 각 정당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순으로 배분하되,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.

각 정당별 = 국회의원이 소속된 ÷ 60 추천인 수 정당의 의석수 ÷ 60

- 2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

3명.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」 제29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, 그 외 노 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다.

- 4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5.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6.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사회의 사장 추천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임기 등) ① 진

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- 1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1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4(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직원의 임면)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직원의 임면은 방송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면한다.
 - 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, 동의가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(이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	제6조(임원) ①
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	<u>15명</u>
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	
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	
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	
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	
한다.	<u>.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<u>전문성</u>	④ <u>전문성,</u>
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	<u>지역</u>
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	
<u>명한다</u> .	<u>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라</u>
	추천된 사람 15명이 포함되어
	야 한다.
<u><신 설></u>	1.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
	추천하는 5명. 이 때, 각 정당
	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
	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
	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
	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
	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
	배분하되, 소숫점 이하 수가
	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

<u>다.</u>

각 정당별 국회의원이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

- 2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
 사업자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 제29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, 그 외 노동조합에서 2명, 그 외 노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다.
- 4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5.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사람 1명
- 6.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⑤ · ⑥ (생 략)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④ ------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⑤ • ⑥ (생략)

<신 설>

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, 공모 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·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-----. 다만,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 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 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이사회의 사장 추천의 절차 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제10조의3(진흥회가 최다출자자

- 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임기 등)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 한다.
- 1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

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 제10조의4(진흥회가 최다출자자

 인 방송사업자 직원의 임면)

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

<신 설>

송사업자 직원의 임면은 방송 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면 한다.

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, 동의가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다.